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127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홍기

변론 종결2024. 11. 21.

판결 선고2024. 11.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11. 16.
접수 제32945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11.
16. 접수 제3294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E(이하 '채무자'라 한다)와 사이에 2023. 5. 15. 오토금융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채무자는 2023. 11. 27.경부터 그 이자 등의 변제를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4차전100852호로 대여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24. "채무자는 원고에게 30,739,61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24. 4.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채무자에게 2022. 2. 28.경부터 2023. 11. 2.경까지 F은행 계좌를 통하여 57,200,000원, G은행 계좌를 통하여 9,100,000원, H를 통하여 18,552,000원, 총 합계 84,852,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6,0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78,852,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채무 변제를 독촉하다가 채무자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채무자는 2023. 11. 7. 계룡시 I 전 22㎡, J 대 54㎡(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6,000,000원(이 사건 제1토지 4,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 12,000,000원)으로 정하여, K 대 144㎡에 관하여 매매대금 34,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23. 11. 16.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11. 16. 접수 제32945호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11. 16. 접수 제3294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피고 이외에 L카드, M카드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대출금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라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룬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채무자는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까지 알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그 외 압류,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마쳐진 적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48,252,200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였던 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특별히 염가에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는 원고에 대하여 이자 등을 제대로 변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숙미

별지